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진행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8. 28. ~ 9.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체포·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계속 필요한 사건

③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